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72

발의연월일: 2022. 8. 30.

발 의 자:김선교·태영호·조수진

조경태·박 진·권성동

서일준 · 이태규 · 이종배

김상훈 · 홍문표 · 윤상현

양금희 · 김정재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, 방역,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 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 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구체적으로,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. 이로 인하여 중량이 작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 혹은 더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, 해당 분야의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 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) 단서). 법률 제 호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"사람"을 "사람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7호가목5) 단서 중 "노약자용 보행기"를 "노약자용 보행기, 자율주행 로봇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"보도"(步道)란 연석선, 안	10
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	
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	
보행자(유모차, 보행보조용	
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	
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	
구·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	
는 <u>사람</u> 을 포함한다. 이하	<u>사람 및 행정안전부령으</u>
같다)가 통행할 수 있도록	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
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	
11. ~ 16. (생 략)	11. ~ 16. (현행과 같음)
17. "차마"란 다음 각 목의 차	17
와 우마를 말한다.	
가. "차"란 다음의 어느 하나	7}
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
1) ~ 4) (생 략)	1) ~ 4) (현행과 같음)
5)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	5)
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	

도로에서 운전되는 것. 다 만, 철길이나 가설(架設)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, 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 자차, <u>노약자용 보행기</u>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는 제외한다.

나. (생 략) 17의2. ~ 33. (생략)

노약자용 보행기, 자
<u>율주행 로봇</u>
나. (현행과 같음)
.3 3 - 3 - 3 - 3 - 3

L 17의2. ~ 33. (현행과 같음)